



『위비트래블 외화예금』 핵심 상품설명서

▶ 기본정보

상품 특 징	위비트래블 체크카드 연결 전용 외화보통예금		
가입대상	내국인 개인 (17세 이상 국민인 거주자) (1인 1계좌)		
가입통화	DKK, SEK, PHP,	CNY, HKD, AUD, CAD, GBP, SGD, CHF, NZD, NOK, THB, TWD, IDR, AED, VND, MYR, HUF, MXN, TRY, , ZAR, RUB, INR	
적용금리(세전) (2025.04.15기준)	① 기본이자율 : 0% ② 우대이자율 : USD 연 1.00%, EUR 연 0.50% (우대이자율은 향후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적용세율	정상일반세율은 이자소득의 15.4% (이자소득세(14.0%) + 지방소득세(1.4%)) (거주재		
예금자보호	0	원금과 이자 포함 5천만원까지 가능	

▶ 유의사항

※ 상품 가입 전 반드시 특약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신 후,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5000, 평일 09~18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래한도 (모든 통화합산)		① 입금 한도 : USD 기준 10,000 상당액/(일) ② 보유 한도 : USD 기준 50,000 상당액
우대서비스 (별도 통지시 까지)	환율우대	① 입금(환전): 환율우대 100% ② 출금(재환전): 환율우대 50% (※환율우대는 스마트뱅킹 거래에서만 적용됨)
	영업점 현찰수령	① USD, EUR, JPY 에 한하여 영업점 현찰 수령 가능 (※ 연 USD 10,000 / EUR 10,000 / JPY 1,000,000 한도범위內) (※ 현찰수수료 1.5% 발생) ② 그 밖의 기타 통화는 영업점 방문하여 현찰 수령 불가능
거래세한		① 해외송금 보내거나(당발송금) 받기(타발송금) 불가 ② 자동이체 지급계좌 등록 불가 ③ 세계혜택, 공동명의, 계좌분할, 양도, 담보제공 : 불가능 ④ 우리은행에 개설된 본인 명의 압출금이 자유로운 원화계좌 보유 필수 - 본인 명의 압출금 자유로운 원화계좌로부터 압금(환전)/지급(재환전) 가능 - 타인 명의 위비트래블 외화여담으로 이제(선물하기) 가능
거래시간		 계좌개설/입금(환전)/출금(재환전) : 24시간 365일 (#2점 시스템점검시간 제외) 계좌해지 : 평일(은행영업일) 09시~21시 선물하기(위비트래블 외화예금 간의 이체) : 평일(은행영업일) 09시~23시



3 유의 사항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규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 및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서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걸 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 이 상품은 우리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고객센터 (1588-5000, 평일 09시~18시) 또는 우리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www.wooribank.com)를 통해 문 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당 센터 (국반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 청할 수 있습니다.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1 7) 1000 E	02 112 22 01 21
용어	설명
압류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번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